

방송통신기자재등(무선) 시험성적서

1. 발급 번호 : HCT-RF-1911-KC003

2. 접 수 일

: 2019년 09월 09일

3. 시 험 기 간 : 2019년 09월 10일 ~ 2019년 10월 31일

4. 신청인(상호명) : 성지산업(주)

사업자등록번호 : 124-81-10763

대표자 성명 : 임성옥

주

5. 기자재 명칭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 54-33(능동)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모 델 명

: / SRM200A

6. 제 조 자 / 제조국가

: 성지산업(주) / 한국

7. 시 험 결 과

: 적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1월 04일

㈜에이치시티 대표이사 (연)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8번길 74(장암리) 17383

전화번호: 031-645-6300 팩스번호: 031-645-6401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한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내역

이 문서의 개정내역이 표시됩니다.

발행일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발행내역
2019년 11월 04일	HCT-RF-1911-KC003	최초 발급

F-TP22-04 2 / 55





목 차

1.	종합 의견	4
2.	시험 기관	5
	2.1 일반현황	5
	2.2 시험장 소재지	5
	2.3 시험기관 지정사항	6
3.	시험 기준	7
	3.1 구조적·기능적 조건	7
	3.2 환경적 조건	29
	3.3 전기적 조건	30
	3.4 안테나 특성 확인 결과	48
	3.5 측정 설비	50
	3.6 측정 사진	51
	3.7 시험기자재 사진	52



1. 종합 의견

	기자재	명칭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모 덜	명	SRM200A					
	용	도	Quad	Quad-mode Module				
	제 즈	자	성지	성지산업(주)				
			WLAN	802.11b/g/n (대역폭: 20 MHz): 2412 ~ 2472 MHz				
		송신	LE1M	2 402 MHz ~ 2 480 MHz				
	주파수		USN	923.3 MHz				
1.시험기자재	一川一		WLAN	802.11b/g/n (대역폭: 20 MHz): 2412 ~ 2472 MHz				
		수신	LE1M	2 402 MHz ~ 2 480 MHz				
			USN	922.3 MHz				
			WLAN	2 412 ~ 2 472 MHz 대역, 802.11b/g/n (대역폭:20 MHz): 10 mW/MHz				
	출	력	LE1M	3.0 mW				
			USN	923.3 MHz : 25 mW				
	사 용	전 원	DC 3.30 V					
2.형식기호	LARN8-IC			01G1DD2D13+2402/2480TR0.003F1D40+ 5F1D1				
3.특기사항		통상 이	용 상태(전력이 20 mW를 초과하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으로, 에서 전파 발사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 위치할경우 자재임.				
4.시험기준	과학기술 과학기술			제1호 "무선설비규칙" 제2019-86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5.시험방법	방송통신	표준심9	의회 KS	X 3123:2019 "무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				
6.기타사항								
시 험 원		(사원)	성 명 박성수 (서명)				
기술책임자		(대리)	성명김남형 (제품)				



2. 시험 기관

2.1 일반현황

기 관 명	㈜에이치시티
대표이사	이 수 찬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8번길 74
전 화 번 호	031-645-6300
팩 스 번 호	031-645-6401
홈페이지	www.hct.co.kr

2.2 시험장 소재지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8번길 74
전 화 번 호	031-645-6300
팩 스 번 호	031-645-6401

F-TP22-04 5 / 55



2.3 시험기관 지정사항

■ 관련고시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지정번호: KR0032

분류 번호	시험종목	분류 번호	시험종목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23-1	MCA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23-2	MCA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23-3	MCA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2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월2)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배)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배2)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254	코드없는 전화기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 (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서설비의 기기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시레이더용)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대역)(이동국)
239-2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대역)(기지국)
239-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5 GHz 대역)(이동국)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5 GHz 대역)(기지국)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5 GHz 대역)(중계장치)



3. 시험 기준

3.1 구조적·기능적 조건

시험항목	Ы	췀	내	Q 0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	h학기술정보 무선설	통신부령 설비규칙	제1호	무	선설비규칙	적	印
	이규칙은「전피 제47조에따리 기술기준, 무 무선설비의기	가법」제372 가방송표준빙 선설비의안 I술기준을규	당식, 무선(전시설기(당함을목: .07.26	설비의 준등 적으로한다.				



시험항목	٨l	췸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제5조(주파수 ① 송신설비 허용편치 과학기술	l에서 발사되는 별표 1. 등정보통신부 파수 허용편	무선설비규칙	적 합			
	—	적용하기 (통신연합에서 를 적용한다			해당없음		
	별표 2와 무선설비의			적 합			
	② 제1항을 적 국제전기통(적용한다.		역폭을		해당없음		
	제7조(협대역. 영역 경 무선설비의 협 스퓨리어스 영	계기준) I대역. 광대역			해당없음		
	제8조(스퓨리(① 송신설비어 불요발사의(다만, 과학기 용도에따라 허용치를 별	l서 발사되는 허용치는 별 미술정보통신 스퓨리어스	= 스퓨리(표 4와 깉 !부장관은 영역 불요	어스 영역 다. 무선설비의 3발사의			적 합



시험항목	시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적용한다.	무선설비규칙	해당없음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① 전파형식별 안테나공급전력의 표시와 환산비는 별표 5와 같고,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의 용도에 따라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적합
	② 송신설비의 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해당없음
	 500메가헤르츠(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로서 정격출력 1와트(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 생존정(生存艇)에 사용되는 비상용 무선설비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부이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송신설비(방송을 하는 실험국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두포락선전력, 평균전력 또는 반송파전력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송신설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송신설비의 전력에 대하여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전력 외에 등가등방복사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을 함께 표시할수 있다.		해당없음



시험항목	YI	점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부터 부차 ² !안테나와 (당 안테나회의 데시벨밀리, 과학기술정 단전파의 세	전기적 상수 로를 사용하(와트(dBmW !보통신부장	(常數)가 여 측정한) 이하이어야 관은 무선설비의	무선설비규칙	적 합
	 ② 수신설비는한다. 1. 수신주파수 2. 선택도가를 3. 내부잡음이 4. 감도는 낮음 	:는 운용범위 클 것 적을 것	위 이내일 것			해당없음



시험항목	۸I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별표 나공급전력 9조제1항 원	역 허용편차				무선설비규칙	저 합
구조적· 기능적 조건	송	당신설비			허용 상한 퍼센 트	용편차 하한 퍼센트	1 2 2 3 7 1	
	1. 방송국(초단파방송 또는 탈 방송국 및 위성방송보조국				5	10		
	2. 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	국의 송신설비			10	20		
	3.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	송국의 송신설년	<u> </u>		5	5		
	4. 해안국, 항공국 또는 선박 송신설비로서 25.11배 이히 사용하는 것 5. 선박국의 송신설비로서 다 가.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 535 배 이하의 주파수의 나.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 3,900 배 이하의 주파수	하의 주파수의 (음 각목에 해당 I로서 405 kb 특 전파를 사용히 I로서 1,605 kb	전파를 하는 것 부터 나는 것 부터		10	20		
	6. 다음 각목의 송신설비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 나. 생존정의 송신설비 다.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 라.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	ı			50	20		
	7. 다음 각목의 송신설비가. 아마추어국의 송신설비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다. 위성방송보조국의 송신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다. 주파수공용통신(TRS) 보	나는 무선국의 원 !설비 설할 수 있는 F	무선국의 송신설!	lt.	20	-		
	8. 그 밖의 송신설비				20	50		



시험항목	Л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부	
시험항목 구조적· 기능적 조건	® 과학기 신고	I술정보통신하지 아니하 선국용 무선 제1조 전파법」제4 나 신고하지 !설비의 기를 제2조(정하고 개설 !하고 개설 !설비에 대	보보고시 제 ·고 개설할 선설비의기 장 총칙 (목적) 45조 및 이 술기 (조용범위) 등기 (조용범위)	2019-86호 · 수 있는 술기준 무선설비규칙 개설할 수 규정함을 제4호에 띠 등 적용한다.	신고하; 아니하: 개설할 있는 무선 무선설비 기술기: 있는	지 고 수 국용 의	



시험항목	Ŋ	췸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⑤ 무선랜 특정소출	 7조(특정소 을 포함한 ! :력무선기기 대역, 안테	무선접속시 의 기술기	스템용(\ 준은 다	WAS)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해당없음
	주파수 대역	점유주파수	안테나공급	안테나	비고		
	(MHz)	대역폭 0.5MHz 이상 20MHz 이하	전력밀도 10mW/MHz 이하	절대이득	*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력 밀도는 평균치이며, 안 테나 절대이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값만큼 저강된 것일 것		
		20MHz 초과 40MHz 이하	5mW/MHz 이 하		* 제7항의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과 하나의 기기로 제작할 수 있다. * 무선기기는 5150~5350MHz, 5470~5725MHz 및		
	5150~5350 5470~5850	40MHz 초과 80MHz 이하	2.5mW/MHz 이하	7dBi 이하	제7항의 5725~5850MHz의 대 역에서 복수개의 80MHz폭 주파수를 연 속 또는 비번속으로 묶 어 최대 160MHz 점유 주파수대역폭으로 1개 채널로 사용할 수 있 고, 이 경우 전력밀도 는 1.25mW/MHz 이하 일 것		
		80MHz 초과 160MHz 이하	1.25mW/MHz 0I ਨੇ		※ 5230~ 5250MHz 주파수대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포함하는 점 유주파수대역폭 40MHz 이하 전파 사 용 기기의 경우, 안테 나공급전력밀도는 2.5mW/MHz 이하일 것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MHz 이하	10mW 이하	2.15dBi 이하	무선 LAN 용도에 한함		
	17700~17740 19260~19300	10MHz 초과 40MHz 이하	1mW/MHz 이하	23 dBi 0 ਰੋ\	고정 점대점 통신에 한함		



시험항목	٨l	췸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시험항목 구조적· 기능적 조건	2. 제 1호에 사용하는 다만, 제7 기기는 이 가. 주파수허용 나. 불요발사는 주파수에서	의한 5GHz 무선기기는 항 제3호, 조항의 규 용편차는 ± = 제1호에 I 안테나 절 I -27 dBm	전파수대역 다음의 조건 제5호, 제6호 정을 적용하 20×10 ⁻⁶ 하 의한 주파수 설대이득을 포	의 전파를 번에 적합할 것. 로에 해당하는 지 아니한다. 일 것 =대역 밖의 E함한	신고하지	적 부 해당없음



시험항목	٨l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확인시간 채널이동시간	부 전파를 가	사용하는 ontrol) 등 nic Frequency (State of State of	무선: 및 uency Uency Uency Uency Uency Uency Uency Uency In	기기는 Selec: 기 무 저	tion) 포함한 기기의 시킬 수 C형 주3) - 적용 -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해당없음

F-TP22-04 15 / 55



시험한모	λl	헍	1.11	용	과 려 근 거	전 부
71007			- ч 			
시험항목 구조적· 기능적 조건	조건에 적가. 안테나는 나. 주파수허용다. 스퓨리어를 기본주파수 낮은 값일라. 점유대역을 무선기기는 이격된 주피	의한 17 GMZ 용하는 무선 합할 것. 무선기기의 용편차는 ± 식의 평균전략 것 목이 10 MH 반수에서 보인 목이 10 MH 기기의 대역 이들을 포함	선기기는 다 I 함체와 일 50×10 ⁻⁶ 0 의 불요발시 역보다 40d Hz 이하인 주파수로부 B.5MHz 대 H 30 dB 이 Hz 초과 40 역외발사는 방한평균전력	음의 실체형일 것 기하일 것 I는 B 이상 터 ±20 MHz 역내에 복사되는 상 낮은 값일 : MHz		적



시험항목	시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①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 1. 주파수, 전파형식	호와 같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 합
	2400~ 2483.5 5725~ 5850 2. 직접시퀀스 확산스펙트 첩 확산스펙트럼방식(((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직교주파수분할 다중병 사용하는 것	CSS)을 사용하는 것 E럼방식(FHSS)과 것 포함) 또는		유 () () ()



시험항목	Л	췸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가. 점유주파=	수대역폭, 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적합		
	점유주파수 대역폭	전력밀도	안테나 절대이득	비고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0.5 MHz 초과 26 MHz 이하	<u>10</u> mW/MHz 이하	6 dBi 이하		기술기준	
	26 MHz 초과 40 MHz 이하	5 mW/MHz 이하	(다만, 고정 형 점대점 통신용 무선 설비는 20dBi 이하	※ 전력밀도는 평 균치이며,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 를 초과한 경우에		
	40 MHz 초과 80 MHz 이하	2.5 mW/MHz 이하	일 것 ^{주2)})	을 소파인 당구에 초과한 값만큼 전 력밀도가 저감할 것		
	40 MHz 초과 60 MHz 이하 ^주	0.1 mW/MHz 이하	6 dBi 이하			
	주2) 다음의 명시할 것 "법에 의해 시에 여러 서비스에의 나. 주파수하 다. 불요발시 수에서 10 -30 dBm 라. 5725~55 경우에는	문구를 기기 전방향 전 곳으로 송 기사용은 등 기사용은 등 기사용 이 기사용은 등 기사용은 등 기 이 기사용은 등 기 이 기사용은 등 기사용은 등 기 이 기사용은 등 기 이 기 이 기 이 기 이 기 이 기 이 이 이 이 기 이 기 이	I의 사용자 파발사 및 : 신하는 점- B지되어 있: ±50×10 ⁻⁶ 0 의한 주피 대역폭으로	동일한 정보를 동 대-다지점 습니다" 하일 것 ·수대역 밖의 주피 · 측정하였을 때 世으로 사용하는 것		해당없음



시험항목	Л	험	내	හි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3. 주파수도약 가. 안테나 잘 제2호 가역 나. 송신안테니 전력을 주파 으로 나눈 함 다. 호핑채널은 라. 호핑채널은 라. 호핑소서는 대하여 균등 다만, 반송파 반송파감지() 대하여는 예 바. 하나의 호	설대이득, 주목, 나목, C 라계에 급전 라기에 급전 라이 3 mW 당 점유주피 당 점유주피 당 점되지 하게 호된 하게 호 하게 호 하게 호 하게 호 하게 호 하게 호 하게 호 하게 되 하다 의채널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하 전「		
	4. 2400 ~ 248 확산방식을 가. 실효복사전 나. 안테나는 다. 주파수허용 라. 점유주파수 마. 불요발사는 100 kHz 분 -30 dBm 0 바. 식별 코드	사용하지 현력은 10 r 무선기기 함 용편차는 ± 아대역폭은 = 주파수다 해대역폭으 l하일 것	않는 것 mW 이하일 함체와 일체형 50×10 ⁻⁶ 이 26 MHz 이형 1역 밖의 주회 2로 측정하였	것 형일 것 하일 것 하일 것 파일 것 파수에서		해당없음
	가. 중심주파수 나. 안테나는 다. 주파수허용 라. 점유주파수 마. 실효복사전 바. 스퓨리어스	산방식을 우는 5775 무선기기 함 용편차는 ± 수대역폭은 선력은 10 r 노영역에서의 의 평균전략	사용하지 않 MHz일 것 함체와 일체 100×10 ⁻⁶ 이 70 MHz 이경 nW 이하일	형일 것 하일 것 하일 것 것 =		해당없음



시험항목	시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6. 5795~581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변조를 사용하는 것가. 공통조건 (1) 중심주파수는 5800 MHz 또는 5810 MHz 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10 mW이하일 것 (3) 통신방식은 복신방식. 반복신방식 또는 단신방식일 것 (4)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 MHz이내일 것 (5)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기본파로부터 10MHz이격된 주파수에서 8 MHz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파 전력에 비하여 40 dB 이상 낮을 것 (다)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1 MHz (촉정하는 주파수가 1 GHz 미만인 경우에는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26 dBm 이하일 것 (6)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나. 노변장치(RSE: Road Side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 ⁻⁶ 이내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22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다. 이동체탑재장치(OBE: On Board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100×10 ⁻⁶ 이내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8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은 10대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8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은 10대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의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처감할 것 (3) 노변장치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것일 것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하당 다 다

F-TP22-04 20 / 55



시험항목	Л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 조 전 조건	또는 2470 나. 안테나공 다. 점유주파- 라. 주파수허용	용하는 것 사는 2410 MHz 일 것 급전력은 10 수대역폭은 용편차는 ± 스영역에서의 보다 40 dB 쉽게 개봉함 보다를 사용 나다를 사용 나다를 사용 나다, 안테니	MHz, 2430 I 0 mW 이하 9 16 MHz 이 50×10 ⁻⁶ 이 의 불요발사 이상 낮은 할 수 없을 장 dBi 이하일 하는 경우에 나 절대이득(한 값만큼	MHz, 2450 MHz 일 것 하일 것. 하일 것 는 기본주파수의 값일 것 것 ! 것. 다만, 는 20 dBi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음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시험항목	시 혐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제8조(RFID/USN 등: ④ 917~923.5 MHz 주파수대역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벽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규칙	적 합			
기능적 조건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 전합할 것	재널 주파수 (MHz) 채널 주파수 (MHz) 채널 주파수 (MHz) 채널 주파수 (MHz) 1 917.1 9 918.7 17 920.3 25 921.9 2 917.3 10 918.9 18 920.5 26 922.1 3 917.5 11 919.1 19 920.7 27 922.3 4 917.7 12 919.3 20 920.9 28 922.5 5 917.9 13 919.5 21 921.1 29 922.7 6 918.1 14 919.7 22 921.3 30 922.9 7 918.3 15 919.9 23 921.5 31 923.1					
	F7D, G1D, G7D 중1 이상을 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 ±40×10 ⁻⁶ 이하일 것			적 합			
	4.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한 표를 따를 것	복사전력은 다음		적합			
	채널	기준값					
	1, 3, 4, 6, 7, 9, 10, 12, 13, 15, 16, 18	3 mW 이하					
	2, 5, 8, 11, 14, 17, 19, 20~25	10 mW 이하					
	<u>26~32</u>	<u>25 mW 이하</u> 200 mW 이하					
	20~32	# 실외 고정형 점대다점 (Point-to-multipoint) 무선기기에 한함					
	5.점유주파수대폭은 917~92		적 합				
	6.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	을 사용하고,		해당 없음			

F-TP22-04 22 / 55



		-1			L
시험항목	Al i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식을 이용하는 수신하여 그 수 이하인 경우에	지(Listen Before 경우 송신전 5 m 신신호의 세기가 한하여 전파를 빌 중단하여 50ms (s 이상 -65 dBm :사하고, 4초	무선설비규칙	적 합
		: 이외의 방식을 (의 점유시간은 디	음 표를 따를 것		해당없음
	포함한 복사전력	점 <u>'</u>	유시간		
	10 mW 이하	임의의 20초 주	기 동안에 2%이내		
	10 mW 초과 25 mW 이	하 임의의 40초 주고	기 동안에 1%이내		
	25 mW 초과	임의의 80초 주기	기 동안에0.5%이내		
	9.지정주파수대 기준값 이하일	바깥에서의 불요 것	발사는 다음의		적 합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 GHz 미만	- 36 dBm ※ 다만, 공중선절대 이득을 포함한복사전 력이 25 mW를 초과하는기기는 904~915 MHz 대 역에서-76 dBm 이하일 것	100 KHz ※ 다만, 지정주파수 대의 끝으로부터 200 KHz이내에서는 3 KHz, 400 KHz 이내에 서는 30 KHz를 적용 한다.		
	1 GHz 이상	- 30 dBm	1 MHz		
	10.수신 또는 송신 다음의 기준값 주파수 1 GHz 미만 1 GHz 이상		차적 전파발사는 기준대역폭 100 KHz 1 MHz		적 합
	전파혼신 가능	성이 있으며, 타 수 있음"이라	"이 기기는 사용 중 기기로 부터 유해힌 는 문구를 명시하고		적합
	12. 기간통신역무 위치정보를관리히	제공을 위한 하기 위해 과학 무선설비를 설치	고정식 무선설비의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적 합



시험항목	시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4.3 안테나특성 확인방법 ①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테나특성을 확인한다. 다만, 수신설비는 예외로 한다.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적 합
	a) 안테나와 송신 장치 사이에는 증폭기 등 능동 회로가 부가되지 아니한 것일 것 b) 안테나의 종류 및 형태(형식, 길이, 외관 사진 등) c) 안테나의 이득 및 지향 특성(전계 강도로 규정된 기기는 예외) d) 안테나의 편파 특성(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e) 송신 장치와의 접속 형태(내장형, 고정형 또는 커넥터 규격 등) f) 안테나의 제작자 및 모델명(상품명이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의한 안테나 특성의 확인은 안테나의 제작자가 시험하여 작성한 성적서, 이득 패턴도 또는 안테나 카탈로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3 환경적 조건의 구분 기자재에 대한 환경적 조건의 구분은 부속서 A와 같다. 다른 기자재에 부가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통상 실내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중 본체 기자재의 동작 온도 범위가 부속서 B의 규정에 의한 환경적 조건 적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고정국 또는 기지국으로 옥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속서 A의 온도 시험 조건 ⓐ, ⑥, ⑥ 중 선택하거나 또는 설명서에 명시한 온도 범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ல்I 전「



시험항목	٨l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시험항목 구조적· 기능적 조건	5.4 대상 대상 기자재를 부속서 B와 집 대상 기자재를 부속서 B와 집 시험절차는 [2] 함하다. 다만, 기차재, 사는 전의 경우에서 연을 실시한다. c) 5.3 항에 따라 정격 및 규정된 전기는 현기기는 혼 즉과 주파수 전기통신사업용	기자재별 경 당	적합성 평가 경기 적합성 평가 경기 적 명기 적 명기 전 명기 전 명이 되었다. 이 명 역 에 고 문 약 여 이 가 지 한 의 의 가 하 여 기 지 한 의 이 가 이 의 이 의 이 의 이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적용 구분 환후 5.6 대에만 성은 기를 수온시 적용을 상만을 하시시하다. 이 의 환경 다만, 이 어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관 련 근 거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부 없 해 적 전 전 전 하 전 전 전



시험항목	Л	둼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5.6 a) 송신 설비, = 설비 규칙 항목 설비 규칙의 등 b) 정상적으로 등 이상이 없는지	수신 설비 ! 목에 대하야 규정에 적힡 동작하고 피	시험을 행하는 확인한 사손·발화 및	의 전기적 무선 하고 국내 무선 !다.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합 적
	5.7 a) 출력 가변형의 다음의 사항과 — 연속적인 출 시험 — 단계적인 출 의 출력을 5 b) 여러 전파 형설	같이 안테니 출력 가변인 출력 가변인 모두 시험		해당없음		
	한다. — 주파수 허용	용 편차에 대	한 시험은 각			적용
	간이 무선=의 디지털주파수 분할	시분할 다. 다중 접속 하나의 전]	공공용을 포함 중 접속 방식 방식인 경우 파 형식에 대한	의 전파 형식에 해서만 시험한다.		해당없음
	 - 당해 주파수 있는 주파수 이 경우, 당한 발진기를 사시함은 어느 - 대상 기기가 있는 경우에 설명과 같은 무선 기기로 경우에는 중 등 사용된 등 	아대의 상한, 에 대하여 ³ 해 주파수 ¹ 용하는 대싱 한 주파수(바 다수의 분 는 각각의 ³ 방법으로 / 서 여러 개의 단파대, 단대 발진기의 구현		적 용		
	—위의 조건0 자용 주파	베도 불구하 - 대역을 구 - 지상에 설	고 2개 이상의	하여 시험한다. 전기 통신 사업 치(광중계 장치를 각 주파수		해당없음



시험항목	Л	췸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시험항목 구조적· 기능적 조건	d) 무선 주파수 등 함에 있어 그 사용하며, 여의 유한 일이하 'SG'라에 의주파수 및 대역 (이하 'SG'라에 의주파수 및 대형 대상 역할을 하여 공단 이용하여 공단 이용하여 공단에 이상의 을 자는 이상의 음과 이상의을 가 이상의 을 하는 경험 사용하는 경험 사용	발진기를 내경 시기를 내경 지기를 입혀 경우 지기를 하는 이 시의 인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장하다 있으로 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지하는 이 등 / 10 이 등 / 1	관 련 근 거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적 유 하 하 하 하

F-TP22-04 27 / 55



시험항목	Л	험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부
구조적· 기능적 조건	방송통신기가 (RF transce 1. 고주파본 고주파본 등 고주마 포함 는 이어야 그 가입어야 2. 과기비퍼입입다 (정전이야 전 3. 정전이야 전 의 공정합으에 설팅 4. 정당 단구선 무선 6. 무선 6.	iver module (고주파발진 합부, 고주] 함된 부분을 적으로 전자 한다. 데이 을을 가져야 로를 가져야 전원만. 할 접으 보리는 있는 작업을 수 측하거나 데 규칙에 직	교선 송. 수신 송)은 다음 조 !부, 고주파 마변조부, 말한다.) 파적인 차폐 터가 들어 데(한다. 하고 있는 데(한다. 하고 있는 더(한다. 하고 있는 점속! 등한 상태(세 가지 이경 변합한지 측절	전을 확인한다. 증폭부, 고주파필터 구조를 가진 도 이터 입력단 완제품에서 있도록 설계되어 리거나 공중선을 거야 한다. 에서 무선 설비 상의 완제품에서 정하여야 한다.		해당없음



3.2 환경적 조건

※ 다음 시험조건에서 기계적으로 지장없이 동작하고 파손, 발화, 발연등의 이상을 나타내지 아니할 것

시험항목	Л	형	내	용	관 련 근 거	적 두	1
진 동	ⓐ 전진폭 3 ™ 의 진동 및 전 에서 1,800회 로 각각 30분 저고저의 순서 을 가하여 동작	진폭 1 ㎜ 까지의 진동 간(10분간의 로 변동시	, 진동수 [동을 상하죠 리 주기로 킨다)가한	배분 500회 나우 및 전후 진동수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해당입	없음
충 격	(a)5 때의 높이 무판위에 낙하 하 시킨다. 측 복 시험 후 정 때 파손, 발화,	면이 평행 정대상기기 격시험을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해당 일	없음		
연속동작	@통상의 사용	조건으로 (8시간 동작	·시켰을 때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해당 8	없음
온 도	ⓐ (-)20 ℃와 방치한 후 그 가하여 동작시	온도에서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저 ह	iòl
습 도	ⓐ(+) 35 ℃에 방치후 상온·상 을 가하여 동작	습에 복귀/	시켜 규정돈		방송통신표준심의회 KS X 3123:2019	적 [ion I



3.3 전기적 조건

기자재 명칭	SRM200A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시험 주파수	F1: 2412.0 MHz F2: 2442.0 MHz F3: 2472.0 MHz						
시 험 모 드		802.11b, G1D					
시 험 환 경	상 온	고 온	저 온	습 도			
시발된경	+ 15 °C ~ + 35 °C	+ 50 ℃	- 20 ℃	+ 35 ℃, 95 %			

※ 시동 후 1분 경과 이후에 다음의 전기적 조건을 충족시킬 것

		.	Л	험 결	과		-1 L
	시 험	항 목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합 격 기 준	적 부
		상 온	6.13	6.26	6.05		
	C 4	고 온	4.49	4.54	4.33		
	F1	저 온	9.70	9.66	9.75	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무선국용	
전		습 도	6.08	6.26	6.11	무선설비의기술기준	
력		상 온	5.72	6.05	5.61	제7조7항	
밀	F0	고 온	3.98	3.97	3.86	정격출력:	저하
도	F2	저 온	8.85	8.88	8.88	10 mW/MHz	적 합
(mW/		습 도	5.64	5.92	5.64	(12)mW/MHz 이내	
MHz)		상 온	5.26	5.53	5.19	상한 : 20 %	
	F2	고 온	3.69	3.69	3.58	하한 : 없음	
	F3	저 온	7.90	7.89	7.90		
		습 도	5.25	5.42	5.24		



				취 경	과		
,	시 험	항 목	시	험 결 	T	합 격 기 준	적 부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상 온	-1.69	-1.70	-1.67		
	C 1	고 온	-14.33	-14.38	-14.42		
주	F1	저 온	10.02	10.12	9.96	신고하지아니하고	
파		습 도	-1.72	-1.97	-1.61	개설할수있는 무선국용무선설비의	T. =
수		상 온	-1.97	-2.20	-1.89	기술기준	
허	F0	고 온	-14.66	-14.75	-14.75	제7조7항	
용	F2	저 온	10.02	10.25	9.96	±50×10 ⁻⁶ 이하	적 합
편		습 도	-2.03	-2.23	-1.96	F1(±120.6 kHz)	
차		상 온	-1.85	-2.04	-1.77	F2(±122.1 kHz) F3(±123.6 kHz)	
(kHz)	F0	고 온	-14.75	-14.83	-14.82	_ 10(±120.0 KHz)	
(KI IZ)	F3	저 온	10.25	10.44	10.15		
		습 도	-1.93	-2.08	-1.89		
		상 온	11.58	11.68	11.92		
	C 1	고 온	_	_	_		
점	F1	저 온	_	-	_		
유		습 도	-	-	_		
주		상 온	11.59	11.68	11.93	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무선국용	
파	F0	고 온	_	-	_	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저하
수	F2	저 온	_	-	_	제7조7항	적 합
대		습 도	_	-	_	0.5 MHz 이상 ~ 26 MHz 이하	
역		상 온	11.64	11.73	11.97		
(MHz)	F3	고 온	_				
(1011 12)	FJ	저 온	_	-	_		
		습 도	_	_	_		



			Ы	험 결	과			
٨	니 험	항 목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합 격 기 준	적	부
		상 온	-43.4	-42.7	-39.9			
	C 4	고 온	_	-	_			
岩	F1	저 온	_	_	_			
요		습 도	_	_	_	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무선국용		
발		상 온	-57.4	-57.3	-58.3	무선설비의기술기준		
	50	고 온	-	-	_	제7조7항		-1
사	F2	저 온	_	-	_	주파수대역 밖의 주	적	합
강		습 도	-	-	_	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도		상 온	-41.4	-40.3	-37.2	하였을 때 - 30 dBm 이하일 것		
(dBm)		고 온	_	-	_			
	F3	저 온	-	-	_			
		습 도	_	_	_			
부		상 온	-72.6	-73.5	-73.2			
차	-1	고 온	_	_	_	_		
적	F1	저 온	-	-	_			
		습 도	_	_	_			
전		상 온	-75.4	-72.0	-69.8	무선설비규칙		
파	50	고 온	_	_	_	제12조1항	T-J	- 1
발	F2	저 온	-	-	_	- 54 dBmW 이하일	적	합
사		습 도	-	-	_	것		
강		상 온	-75.9	-72.1	-70.8			
도	5 0	고 온	-	-	_			
(dBm	F3	저 온	-	-	_			
W)		습 도	-	-	_			



기자재 명칭	SRM200A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시험 주파수	F1: 2412.0 MHz F2: 2442.0 MHz F3: 2472.0 MHz							
시 험 모 드		802.11g, D2D						
시 험 환 경	상 온	고 온	저 온	습 도				
시 발 된 경	+ 15 °C ~ + 35 °C	+ 50 ℃	− 20 °C	+ 35 °C, 95 %				

※ 시동 후 1분 경과 이후에 다음의 전기적 조건을 충족시킬 것

			Л	험 결	과			
,	시 험	항 목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합 격 기 준	적	부
		상 온	1.09	1.08	1.08			
	C1	고 온	0.60	0.59	0.59			
	F1	저 온	1.54	1.53	1.54	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무선국용		
전		습 도	1.09	1.08	1.08	무선설비의기술기준		
력		상 온	1.33	1.35	1.32	제7조7항		
밀		고 온	0.84	0.83	0.82	정격출력:	74	÷.
도	F2	저 온	2.11	2.12	2.12	10 mW/MHz	적	입
(mW/		습 도	1.33	1.34	1.32	(12)mW/MHz 이내		
MHz)		상 온	1.08	1.09	1.08	상한 : 20 %		
	F3	고 온	0.79	0.79	0.78	하한 : 없음		
	F3	저 온	1.86	1.87	1.86			
		습 도	1.07	1.08	1.07			



				= 1 ⊃4	٦١		
٨	시 험	항 목	Л	험 결	과	합격기준	적 부
	. –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상 온					
	- 1	고 온					
주	F1	저 온				신고하지아니하고	
파		습 도	이네 그저(에 의하여 대	여벼 1히마	개설할수있는 무선국용무선설비의	
수		상 온		시험되었음.		기술기준	
허		고 온		3 5.7 세부 : 전파 형식을		제7조7항	해당
용	F2	저 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50×10 ⁻⁶ 이하	없음
편		습 도		허용 편차에 나수 대역별로		F1(±-kHz)	
차		상 온		시험한다.		F2(±-kHz) F3(±-kHz)	
		고 온				1 0 (± 11/12)	
(kHz)	F3	저 온					
		습 도	-				
		상 온	18.04	18.08	18.09		
	- 1	고 온	-	_	_		
점	F1	저 온	_	_	_		
유		습 도	-	_	_		
주		상 온	18.48	18.51	18.49	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무선국용	
파	50	고 온	_	_	_	무선설비의기술기준	TJ =1
수	F2	저 온	-	_	_	제7조7항	적 합
대		습 도	_	_	_	0.5 MHz 이상 ~ 26 MHz 이하	
역		상 온	18.21	18.21	18.16	20 1911 12 0101	
(MHz)	F-0	고 온	_	_	_		
(IVIFIZ)	F3	저 온	_	_	_		
		습 도	_	_	_		

34 / 55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합 격 기준	적 부		
	F1	상 온	-34.7	-34.7	-35.0	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7조7항 주파수대역 밖의 주 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고 온	_	_	_			
불		저 온	-	-				
요		습 도	-	-	_			
발	F2	상 온	-54.5	-54.8	-54.9			
		고 온	-	_	_		TI =1	
사		저 온	-	_	_		적 합	
강		습 도	_	_	_			
도	F3	상 온	-33.8	-33.7	-33.2	하였을 때 - 30 dBm 이하일 것		
(dBm)		고 온	_	_	_			
		저 온	-	-	_	_		
		습 도	_	_	_			

35 / 55



기 자 재 명 칭 SRM200A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시험 주파수	F1: 2412.0 MHz	F2: 2442.0 MHz		F3: 2472.0 MHz		
시 험 모 드	802.11n HT20, D2D					
시 험 환 경	상 온	고 온	저 온	습 도		
시 참 관 경	+ 15 °C ~ + 35 °C	+ 50 ℃	− 20 ℃	+ 35 °C, 95 %		

※ 시동 후 1분 경과 이후에 다음의 전기적 조건을 충족시킬 것

			시 험 결 과					
시 험 항		항 목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합 격 기 준	적 부	부
		상 온	1.05	1.06	1.05	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	작	
	F1	고 온	0.56	0.56	0.55			
		저 온	1.49	1.49	1.48			
전		습 도	1.05	1.05	1.05			
력	F2 F3	상 온	0.83	0.82	0.82	제7조7항 정격출력: 10 mW/MHz		
밀		고 온	0.50	0.50	0.49			÷.
도		저 온	1.35	1.36	1.36			ជ
		습 도	0.82	0.82	0.82	(12)mW/MHz 이내		
(mW/ MHz)		상 온	0.66	0.66	0.66	상한 : 20 %		
		고 온	0.47	0.47	0.46	하한 : 없음		
		저 온	1.20	1.19	1.20			
		습 도	0.66	0.66	0.66			



				= 1 ⊃4	٦١		
١ ,	시 험	항 목	Л	험 결	과	합 격 기 준	적 부
	. –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_ , , _	
		상 온					
	- 1	고 온					
주	F1	저 온				신고하지아니하고	
파		습 도	이네 그저(에 의하여 대	여벼 1히마	개설할수있는 무선국용무선설비의	
수		상 온		시험되었음.		기술기준	
허		고 온		3 5.7 세부 : 전파 형식을		제7조7항	해당
용	F2	저 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50×10 ⁻⁶ 이하	없음
편		습 도	주파수 허용 편차에 대한 시험은 각 주파수 대역별로 1회만			F1(±-kHz)	
차		상 온		시험한다.		$F2(\pm -kHz)$ $F3(\pm -kHz)$	
		고 온			1 0 (± 11/12)		
(kHz)	F3	저 온					
		습 도	-				
		상 온	19.55	19.44	19.45		
	- 1	고 온	-	_	_		
점	F1	저 온	_	_	_		
유		습 도	-	_	_		
주		상 온	19.25	19.11	19.13	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무선국용	
파	50	고 온	_	_	_	무선설비의기술기준	TJ =1
수	F2	저 온	-	_	_	제7조7항	적 합
대		습 도	_	_	_	0.5 MHz 이상 ~ 26 MHz 이하	
역		상 온	19.04	19.05	19.16	20 1011 12 0101	
(MHz)		고 온	_	_	_		
(IVII IZ)	F3	저 온	_	_	_		
		습 도	_	_	_		



			٨l	험 결	과			
,	시 험 항 목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합 격 기준	적 벽	루
		상 온	-31.8	-32.0	-32.3			
		고 온	_	_	_	_		
불	F1	저 온	_	_	_			
요		습 도	_	_	_	신고하지아니하고개 설할수있는무선국용		
발		상 온	-55.0	-54.4	-55.2	무선설비의기술기준		
	50	고 온	-	_	_	제7조7항	T1 =	
사	F2	저 온	-	_	_	주파수대역 밖의 주 파수에서 100 kHz	적 힙	4
강		습 도	_	_	_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도		상 온	-35.6	-35.3	-35.3	하였을 때 - 30 dBm 이하일 것		
(dBm)	F2	고 온	_	_	_			
	F3	저 온	-	-	_			
		습 도	_	_	_			

38 / 55



[BT LE]

기자재 명칭	SRM200A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시험 주파수	F1: 2402.0 MHz F2: 2440.0 MHz F3: 2480.0 MHz					
시 험 모 드		BT LE, GFSK, F1D				
시 험 환 경	상 온	고 온	저 온	습 도		
시 함 편 경	+ 15 °C ~ + 35 °C	+ 50 ℃	- 20 ℃	+ 35 °C, 95 %		

※ 시동 후 1분 경과 이후에 다음의 전기적 조건을 충족시킬 것

		a 0	И	험 결	과	=	
	시 험	항 목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합 격 기 준	적 부
		상 온	0.0292	0.0291	0.0292		
	F1	고 온	0.0240	0.0241	0.0239	신고하지 아니하고	
	ГІ	저 온	0.0315	0.0313	0.0316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공		습 도	0.0293	0.0293	0.0293	기술기준 제 7 조	
중		상 온	0.0278	0.0277	0.0278	(3 mW이ōト)	
선	F0	고 온	0.0227	0.0226	0.0226		저하
전	F2	저 온	0.0301	0.0300	0.0301	정격출력:	적 합
력		습 도	0.0278	0.0278	0.0278	3 mW	
(mW)		상 온	0.0271	0.0271	0.0270	(3.6)mW 이내	
	F3	고 온	0.0221	0.0221	0.0221	상한 : 20 %	
	ГО	저 온	0.0294	0.0293	0.0295	연단 · 20 %	
		습 도	0.0270	0.0269	0.0269	하한 : 없음	



				T			T	ı	1
			_	Ŋ	험 결	과			
	시 험	항	목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합 격 기 준	적	부
			상 온	-1.27	-1.26	-1.17			
_	F1		고 온	-7.61	-7.61	-7.53			
주	ГІ		저 온	-5.02	-4.87	-5.00	신고하지아니하고		
파			습 도	-1.27	-1.25	-1.16	개설할수있는 무선국용무선설비의		
수			상 온	-1.35	-1.34	-1.25	기술기준		
허	- -0		고 온	-7.76	-7.75	-7.67	제7조	저	ᇹᅡ
용	F2		저 온	-5.66	-5.50	-5.64	±50×10 ⁻⁶ 이하		합
편			습 도	-1.29	-1.27	-1.19	F1(±120.1 kHz)		
차			상 온	-1.38	-1.37	-1.27	F2(\pm 122.0 kHz) F3(\pm 124.0 kHz)		
(kHz)	F0		고 온	-7.89	-7.89	-7.80			
(1112)	F3		저 온	-6.31	-6.16	-6.27			
			습 도	-1.36	-1.34	-1.26			
			상 온	1.05	1.06	1.06			
	C 1		고 온	_	_	_			
점	F1		저 온	_	-	_			
유			습 도	_	-	_			
주			상 온	1.06	1.05	1.06	신고하지 아니하고		
파	F0		고 온	_	-	_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저	합
수	F2 -		저 온	_	_	_	기술기준 제 7 조	Ä	Si
대			습 도	_	_	_	5 MHz 이하		
역			상 온	1.05	1.06	1.06			
(MHz)	٦٥		고 온	_					
(1411 12)	F3		저 온	_	_	_			
			습 도	_		_			



			٨l	험 결	과		
,	시 험	항 목	- 10 % (2.97 V)	정격전압 (3.30 V)	+ 10 % (3.63 V)	합 격 기 준	적 부
		상 온	-47.9	-47.9	-48.2		
	F1	고 온	_	-	_		
불	ГΙ	저 온	_	_	_		
요		습 도	_	_	_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발		상 온	-54.5	-54.1	-55.1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50	고 온	_	_	_	기술기준 제 7 조	TJ =1
사	F2	저 온	_	-	_	주파수대역 밖의 주	적 합
강		습 도	-	-	_	- 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도		상 온	-50.9	-51.3	-51.7	하였을 때 - 30 dBm 이하일 것	
(dBm)		고 온	_	-	_		
	F3	저 온	_	-	-		
		습 도	-	-	_		
부		상 온	-65.5	-65.5	-65.1		
차	C 1	고 온	_	_	_		
적	F1	저 온	_	_	_		
		습 도	_	_	_		
전		상 온	-65.6	-64.5	-65.4	무선설비규칙	
파	50	고 온	_	_	_	제12조제1항	TJ =1
발	F2	저 온	-	-	_	- 54 dBmW 이하일	적 합
사		습 도	-	-	_	것	
강		상 온	-65.8	-65.5	-65.9		
도	F.0	고 온	-	-	_		
(dBm	F3	저 온	-	-	-		
W)		습 도	_		-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정격전압 (3.30 V)		합격기준	적 부	
체 류	F1	0.00039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시 간	F2	0.00039	무선국용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 제 7 조	적 합	
(s)	F3	0.00039	(0.4초이내 일것)		
호 핑 채 널 수 (개)	2402 MHz ~ 2480 MHz	4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 제 7 조 (중첩되지 않는 15 개 이상일 것)	적 합	



[USN]

기자재 명칭	SRM200A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시험 주파수	F1:923.3	MHz F2:	Hz F2: - MHz F		
시 험 모 드		F1	D		
시 험 환 경	상 온	고 온	저 온	습 도	
시 본 완 경	+ 15 °C ~ + 35 °C	+ 50 ℃	- 20 ℃	+ 35 °C, 95 %	

※ 시동 후 1분 경과 이후에 다음의 전기적 조건을 충족시킬 것

	시 험	하모	٨l	험 결	과	합격기준	적 부
,	,		-10% (2.97 V)	정격전압 (3.30 V)	+10% (3.63 V)	합식기간	Ť H
		상 온	18.17	18.14	18.34		
	C 1	고 온	16.16	16.17	16.30		
실	F1	저 온	20.96	21.03	21.22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		습 도	18.16	18.16	18.37	개설할수있는	
		상 온	_	-	_	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	
복		고 온	_	-	_	제8조 4항 F1 정격출력:	적 합
사	F2	저 온	_	-	_		
전		습 도	_	-	_		
력		상 온	_	-	_		
(mW)	50	고 온	-	-	_		
	F3	저 온	_	-	-		
		습 도	-	-	-		



			٨I	험 결	과			
٨	니 험	항 목	-10% (2.97 V)	정격전압 (3.30 V)	+10% (3.63 V)	합격기준	적	부
		상 온	0.51	0.51	0.50			
주	F1	고 온	0.30	0.30	0.28			
파	ГΙ	저 온	0.49	0.49	0.49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수있는		
		습 도	0.52	0.52	0.51	무선국용		
수		상 온	_	_	_	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8조 4항		
허	רח	고 온	_	_	_		적 i	합
용	F2	저 온	_	_	_	± 40 × 10 ⁻⁶ 이하		
편		습 도	-	-	_	F1 (± 36.9 KHz) F2 (± - KHz)		
		상 온	-	-	_	F3 (± - KHz)		
차	50	고 온	-	-	_			
(kHz)	F3	저 온	_	_	_			
		습 도	-	-	_			
		상 온	923.22 ~923.38	923.22 ~923.38	923.22 ~923.38			
점	F1	고 온	-	-	_			
유		저 온	_	-	_	. 신고하지 아니하고		
		습 도	П	-	_	개설할수있는		
주		상 온	I	-	_	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		
파	F2	고 온	_	_	_	제8조 4항	적	합
수	FZ	저 온	_	_	_			
CH		습 도	-	-	_	917 MHz ~ 923.5 MHz 이내		
		상 온	-	-	_	. "		
역	F0	고 온	-	_	_			
(MHz)	F3	저 온	-	-	_			
		습 도	-	-	_			



			1.1	el 74	¬ı		
	시 험	항 목	Ŋ	험 결	과 	합격기준	적 부
			-10% (2.97 V)	정격전압 (3.30 V)	+10% (3.63 V)	5 1212	
		상 온	-42.4	-41.8	-42.8		
	F1	고 온	Ι	ı	_		
불	1 1	저 온	I	ı	_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수있는	
요		습 도	I	ı	_	무선국용	
발		상 온	_	-	_	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8조 4항	
사	F2	고 온	-	-	_		적 합
강	1 2	저 온	-	-	_	1 GHz 미만 시	
도		습 도	_	-	_	−36 dBm	
()		상 온	Ι	-	_	이하일 것	
(dBm)	50	고 온	Ι	-	_	RBW = 100 kHz	
	F3	저 온	_	-	_		
		습 도	ı	ı	_		
		상 온	-45.8	-46.4	-46.2		
	F1	고 온	-	-	_		
불	1 1	저 온	-	-	_	신고하지 아니하고	
요		습 도	_	_	_	개설할수있는 무선국용	
발		상 온	-	-	_	무선설비의기술기준	
사	F2	고 온	-	-	_	제8조 4항	적 합
강	ΓΖ	저 온	_	_	_	1 GHz 이상시	
도		습 도	-	-	_		
(11)		상 온	_	_	_	-30 dBm 이하일 것	
(dBm)	F3	고 온	_		_	RBW = 1 MHz	
	гЗ	저 온	_		_	11000 - 1 101112	
		습 도	_	_	_		



기자재 명칭	SRM200A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시험 주파수	F1: 922.3 MHz F2: - MHz F3: - MHz			F3:- MHz		
시 험 모 드		F1D				
시 험 환 경	상 온	고 온	저 온	- 습 도		
시 발 완 경	+ 15 °C ~ + 35 °C	+ 50 ℃	- 20 ℃	+ 35 °C, 95 %		

※ 시동 후 1분 경과 이후에 다음의 전기적 조건을 충족시킬 것

			시 험 결 과		과	ᇵ거기조	저 H	
시 험 항 목		-10% (2.97 V)	정격전압 (3.30 V)	+10% (3.63 V)	합격기준	적 부		
		상 온	-90.6	-90.8	-91.7			
부		고 온	_	-	-			
차	F1	저 온	-	_	_	신고하지 아니하고		
적		습 도	_	-	_	개설할수있는 무선국용		
전	F2	상 온	_	-	_	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8조 4항		
파		F2	고 온	_	_	_		적 합
발 사			저 온	_	-	-	1 GHz 미만 시	
강		습 도	-	-	-	-54 dBm		
도		상 온	_	_	_	이하일 것		
()	F0	고 온	_	_	_	RBW = 100 KHz		
(dBm)	F3	저 온	-	_	_			
		습 도	_		_			



		-	Л	험 결	과	ᇍ거기조	ъ н
시 험 항 목		-10% (2.97 V)	정격전압 (3.30 V)	+10% (3.63 V)	합격기준	적 부	
		상 온	-74.8	-75.3	-77.2		
부	- 1	고 온	_	-	_		
차	F1	저 온	-	-	_		
적		습 도	_	-	_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수있는	
전		상 온	_	-	_	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	
파		고 온	_	_	_	제8조 4항	적 합
발	F2	저 온	_	_	_	1 GHz 이상 시	
사 강		습 도	_	_	_	-47 dBm 이하일 것	
0 도		상 온	_	_	_		
(11)		고 온	_	_	_	RBW = 1 MHz	
(dBm)	F3	저 온	_	_	_		
		습 도	_	_	_		

시험항목	합 격 기 준	적 부
송 신 전 신 호 감 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 8 조 4 항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 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ms 이상 휴지할 것	전 합



3.4 안테나 특성 확인 결과

[WIFI ANT]

항 목	내 용			
안테나의 종류 및 형태	Dipole-Antenna			
안테나 이득(dBi)	4.44 dBi			
지향특성	무지향성			
안테나의 편파특성	해당없음			
송신장치와의 접속형태	내장형			
안테나의 제작자 및 모델명	INNO-LINK / INNO-EWFSWS-151			
이득 측정기관명	INNO-LINK			

[BLE ANT]

항 목	내 용			
안테나의 종류 및 형태	Dipole-Antenna			
안테나 이득(dBi)	5.33 dBi			
지향특성	무지향성			
안테나의 편파특성	해당없음			
송신장치와의 접속형태	내장형			
안테나의 제작자 및 모델명	INNO-LINK / INNO-EWFSWS-151			
이득 측정기관명	INNO-LINK			





[USN ANT]

항 목	내 용			
안테나의 종류 및 형태	Dipole-Antenna			
안테나 이득(dBi)	1.98 dBi			
지향특성	무지향성			
안테나의 편파특성	해당없음			
송신장치와의 접속형태	내장형			
안테나의 제작자 및 모델명	INNO-LINK / INNO-ADI-0269			
이득 측정기관명	INNO-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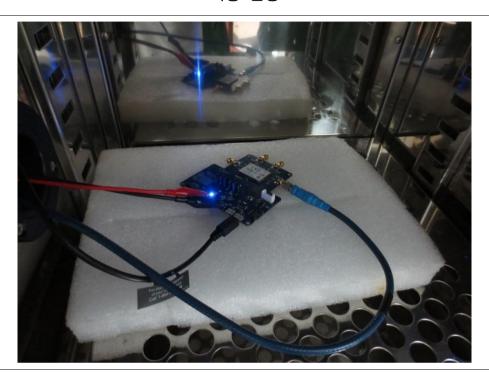
3.5 측정 설비

사용여부	품명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사양	차기 교정일자
•	온도챔버	EXP	EX-TH400	NONE	-40℃ ~ +150℃	2020-06-13
	항온항습기	ESPEC CORP.	SH-642	93000717	-40°C ~ +150°C / 0 ~ 95% R.H.	2020-08-14
	Signal Analyzer	AGILENT	N9020A	MY51240342	20 Hz ~ 26.5 GHz	2020-02-14
•	직류전원공급기	AGILENT	E3632A	MY50360067	0 - 15V. 7A / 0 - 30V, 4A	2020-02-14
	ATTENUATOR	Agilent	8493C	08964	DC-26.5 GHz,20dB,2W	2020-02-15
•	POWER DIVIDER	Agilent	11636B	51942	DC-26.5 GHz / 0.5W MAX	2020-02-15
	Signal Generator	Agilent	M5182A	MY50140312	100 kHz ~ 6 GHz	2020-08-21



3.6 측정 사진

측정 전경



시험실 전경



F-TP22-04 51 /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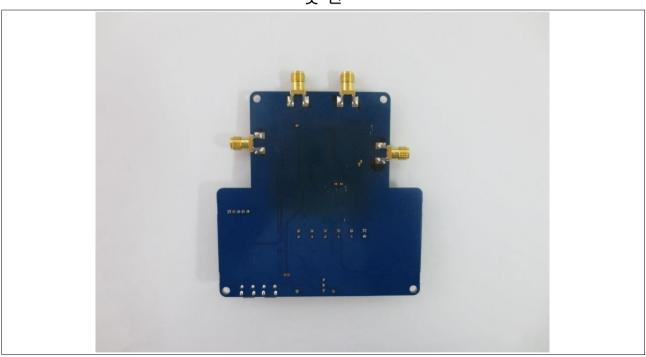


3.7 시험기자재 사진

앞 면



뒷 면



F-TP22-04 52 / 55





라 벨

Monarch Quad-mode Module



MODEL : SRM200A WSSRM200A00S

FCC ID:

2AS8LSRM200A IC: 25119-SRM200A R-R-sJh-SRM200A Seong Ji Industrial

SAFGB2001, AE7BSR20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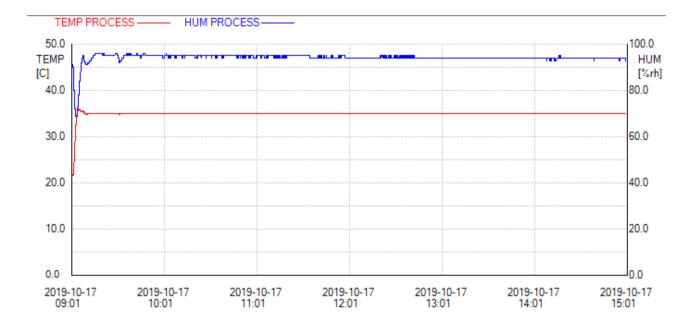






온 습 도 차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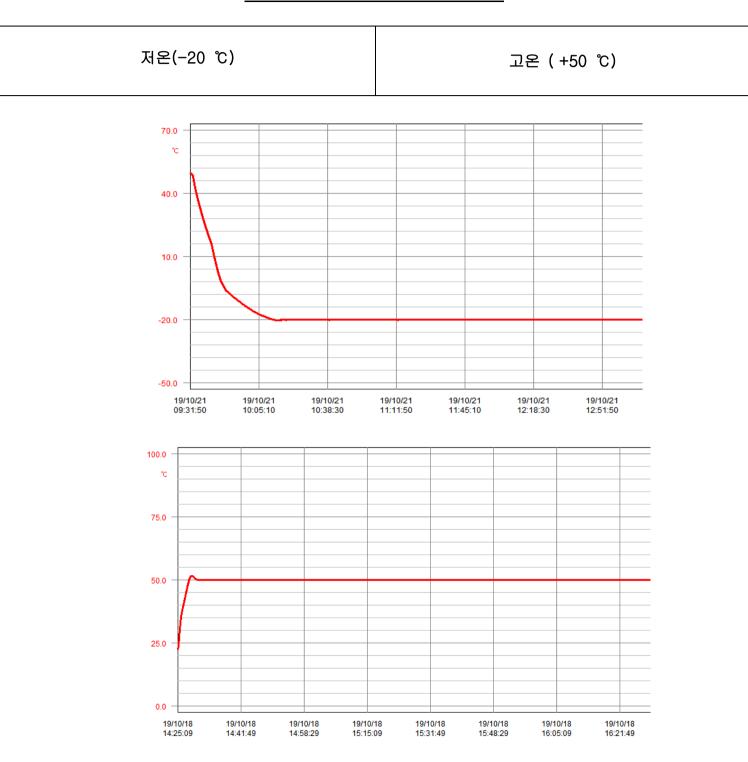
습도 (95%, 3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SRM200A



<u>온 습 도 차</u> 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SRM200A